

2026학년도 1학기 신촌·국제캠퍼스 학부생 일반휴학 안내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수업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휴학 제도이며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창업준비 포함] 군 복무를 위해 수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입대휴학과 구분됩니다.

■ 일반휴학 신청 방법 및 기간

가. 신청방법: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휴학신청 ⇨ 휴학구분 [일반휴학(가사)]로 신청

나. 신청기간

휴학 신청 및 승인 시점	휴학 신청 자격	수업료 반환
2026. 2. 2.(월) 10:00 ~ 3. 16.(월) 17:00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 신청 가능	수업료 전액
2026. 3. 17.(화) 9:00 ~ 5. 15.(금) 17:00	1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후에 휴학 신청 가능	휴학 승인 시점별 수업료 반환을 적용
2026. 5. 16.(토) 9:00 ~ 6. 2.(화) 17:00	질병·출산·천재지변·법적조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휴학 신청 가능	(휴학에 따른 수업료 반환은 5. 29.(금) 17:00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

* 신청 및 승인 시점에 따라 납부한 수업료가 반환되며, 복학 학기로 수업료가 이월되지 않습니다.

■ 일반휴학 종류 및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일반휴학	별도 서류 없음	
입대휴학 만료자 일반휴학	- 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복무확인서 등 성명, 생년월일, 입대일 및 전역일이 명시되어있는 서류	* 전역 후 입대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질병휴학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본교 의료원 또는 보건복지부 지정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 - 1개월 이상 학업 수행이 불가능함 또는 1개월 이상 입원 또는 안정가료가 필요 하다는 전문 소견 명시 - 건강센터 확인서: 진단서를 지참 후 건강센터(학생 회관 2층, ☎ 02-2123-3346)에 방문하여 발급(사전 예약 필수) * 의사 진료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오후3시	* 질병의 종류에 따라 진단서 발급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니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예약 후 학생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족 대리 방문 가능(유의사항 참고)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창업·창업준비휴학	- 창업지원단 (☎ 02-2123-4322)에 관련 서류(신청서, 회사소개서, 성과증빙서류, 사업아이템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여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일반휴학과 신청기간이 <u>상이하므로</u> 창업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_ <u>확인 필요</u>

■ 일반휴학 기간

- 가.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건축학(5년제) 과정은 7학기, 약학대학 약학과 2+4년제 편입생은 3년(6학기), 통합 6년제는 4년(8학기)까지 가능하며, 편입학생의 휴학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연한의 1/2 이내로 함
- 나. 휴학 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질병 치료를 이유로 휴학연한의 연장을 청원하고 소속 대학장이 제정할 경우 총장은 1학기 간의 휴학을 최대 2학기까지 허가할 수 있음
- 다. 임신, 출산 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단,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 1년, 통산하여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으며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 라. 창업(준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 1년, 통산하여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으며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 마. 국가고시(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기술), 입법고시) 합격자가 연수원 교육으로 인하여 휴학기간 연한을 초과하여 휴학해야 할 경우 소속 대학장의 제청으로 연수원 교육기간만큼 휴학 연장을 허가할 수 있음
- 바. 휴학학기 수 조회 :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생 ⇨ 학적정보조회

■ 일반휴학 기간 연장

- 가. 휴학 잔여 학기가 있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장
- 나. 휴학 잔여 학기가 없을 경우: 복학 신청 및 등록금 납부 필수 (미등록시 제적함)

■ 일반휴학 신청 취소 방법

- 가. 일반휴학 취소 가능 기한
 - 1) 2026. 3. 4.(수) 17:00(수강변경 전일)까지, 신청한 날부터 1주일 이내, 1회에 한해 취소 가능
 - 2) 취소 가능 기한이 지나거나 신청한 날로부터 1주일이 지난 경우에는 **취소 불가**
- 나. 취소 신청 방법
 - 1) 연세포탈서비스에서 신청
 - 취소 가능 기간: 2026. 2. 2.(월) 10:00 ~ 2026. 2. 13.(금) 17:00(수강신청 마지막 날)
 -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학적 ⇨ [휴복학] ⇨ [일반휴학취소신청]
 - 2) 일반휴학 취소원 제출
 - 취소 가능 기간: 2026. 2. 19.(목) 10:00 ~ 2026. 3. 4.(수) 17:00(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 전)
 - [학교 홈페이지 ⇨ 학사지원 ⇨ 각종 신청서 양식 모음]에서 '일반휴학 취소원'을 내려 받아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
- 다. 재학생이 일반휴학을 취소할 경우 학적 상태는 '재학'으로 환원됨. 단, 휴학 신청 시 기존의 수강신청 자료가 자동 삭제되므로 **휴학을 취소하더라도 기존 과목의 수강권을 보장받을 수 없음**

■ 휴학 승인 시점별 수업료 반환

휴학 승인 시점	수업료 반환률	비고
2026. 3. 16.(월) 17:00 까지	전액	
3. 30.(월) 17:00 까지	수업료의 5/6	
4. 29.(수) 17:00 까지	수업료의 2/3	
5. 15.(금) 17:00 까지 <일반휴학 마감 일자>	수업료의 1/2	학기 2/3선
5. 29.(금) 17:00 까지	수업료의 1/2	질병·출산·천재지변·법적조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5. 29.(금) 17:01 이후	반환 없음	

가. 수업료 반환은 학기별 등록금 반환 일정에 준함

나. **수업료 반환 소요 기간 : 휴학 승인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약 2주**

다. 반환 계좌 : 학생 본인의 연세포탈서비스 등록 계좌 (**계좌 정보 미등록시 휴학 신청 불가, 휴학 신청 시점에 등록된 계좌로 반환 [휴학 후 수정 시 미적용]**)

- 1) <http://portal.yonsei.ac.kr> 로그인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정보조회 → 계좌정보 변경 →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입력 → 계좌확인 → 저장
※ 외국국적자 계좌등록 '확인' 처리는 재무회계팀을 통해서 가능
(예금주명과 학사포탈상 성명이 다를 경우, 재무회계팀의 '계좌등록확인' 절차 필요)
(fiwebmaster@yonsei.ac.kr 로 (1) 학생증 사본, (2) 신분증 사본, (3) 통장사본 메일 송부 시 순차적으로 계좌등록 확인 진행, ☎ 02-2123-4500)
- 2)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반환액은 대출받은 기관으로 상환
- 3) 장학금 수혜자는 학생지원팀(학생회관 218호, ☎ 02-2123-5115)에 장학금 취소 신청을 해야 휴학 신청 가능

■ 유의사항

가. 학기 중 일반휴학을 한 학생은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나.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예정자복수전공 합격생(캠퍼스내/간 복수전공은 해당사항 없음)의 첫 학기에는 질병, 임신, 출산, 입대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음

다.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VSP) 기간 동안에는 휴학 불가

라. 미납 도서가 있는 경우 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학술문화처 도서관 학술자료운영팀 문의 ☎ 02-2123-3309, 3314)

마. **휴학 신청 전 반드시 보호자와 충분히 협의하기 바람**

바. **주요 학사 안내와 긴급 연락을 위해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연세포탈서비스에 직접 수정해야 함**

사. 휴학 승인 시점부터 복학허가 후 당해 학기 등록금 완납 전까지는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함

아. 일반휴학 관련 상세 규정: ☑학칙 제8장, ☑학사에대한내규 제6장, 제8장 등
학교 홈페이지 ⇨ 연세소개 ⇨ 대학현황 ⇨ 규정집 ⇨ 본문 '휴학' 검색하여 확인 가능

자. 질병휴학 신청을 위한 건강센터 확인서 발급시 학생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 대리 방문이 가능함. 이 경우에는 가족이 **학생의 학생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진단서에 대리 방문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연세대학교 건강센터 문의 ☎ 02-2123-3346)

차. 휴학 관련 문의처

1) 복학 관련 FAQ: 학교 홈페이지 ⇨ 기타안내 ⇨ FAQ ⇨ 학사FAQ ⇨ 휴복학

2) 교무처 학사지원팀

☎ 02-2123-2090: 휴·복학 문의

☎ 02-2123-3200: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